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 반영(안 제3조제2항제2호)
 - 명칭변경 :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담당관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 반영(안 제3조제2항제3호)
 - 명칭변경 : 재난안전실 → 안전건설과, 고용투자정책과 → 일자리경제과, 경제교통과 → 교통정책과, 경관도시과 → 도시재생과
 - 신 설 : 미래디자인담당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 2018.08.27.)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8. 10. 12. ~ 2018. 10. 16.(5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4명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3. 산업건설위원회 6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과(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미래디자인담당관, 산업건설국 소관과(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구성) ①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서로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에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

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 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의회의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